

각종 소장의 소가 및 인지액(환급) 산정 기준 안내

I 소송목적의 값(소가) 산정의 표준 (인지규칙 제9조~제11조)

※ 기본원칙 : ①소제기시 ②청구취지 ③원고 ④직접 받게 될 이익 ⑤객관적으로 평가한 금액

1. 선박, 건축물, 차량, 건설기계, 항공기, 입목, 골프회원권, 콘도미니엄회원권 등 과세시가표준액의 정함이 있는 경우 : 그 과세시가표준액
2. ① 토지 가액 : 면적 × (지분) × 개별공시지가 × 50/100
② 건물 가액 : 총면적 × (지분) × 시가표준액 × 50/100
3. 유가증권 : ① 액면금액 또는 표창하는 권리의 가액으로 하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의 가액은 소제기 전날의 최종거래가액(시세표)
② 비상장주의 가액: 권면액
③ 주주권 확인의소(주주지위확인 소) : 원고 보유 주식의 가액
4. 유가증권 외의 증서가액 : 200,000원
5. 그 외 물건 : ① 소를 제기할 당시의 시가
② 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그 물건 등의 취득가격, 유사한 물건 등의 시가

II 각 소장(심급 등)의 인지액 기준 (인지법 제2조~제10조, 제16조, 민사조정규칙 제3조)

※ 소송목적의 값(소가)의 기준이 아님에 유의

※ 인지액 산정은 I항, III항 및 IV항 규정에 따라 산출된 소가를 별도의 인지액 산정방식에 의하여 계산함

1. ① 소장과 동일 : 독립당사자참가, 공동소송참가(1심),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승계주장사실을 다투는 경우의 권리승계인의 소송참가
② 각종 참가 신청서(무인지) : 보조참가신청서,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신청서, 의무승계인의 소송참가신청서(인지법 제10조).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신청(민소법 제68조), 예비적·선택적 공동소송(민소법 제70조) 등
2. 항소장, 상고장 [재심(재심제기시 기준), 준재심 포함]
① 상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의 소송물 가액 [항소장은 1심 인지액의 1.5배액, 상고장에는 1심 인지액의 2배액(비약적 상고 포함)]
② 쌍방상소는 각각 그 불복 범위 내에서 별도로 상소의 소가를 계산
3. 반소장(통상의 소와 동일) : 단, 본소와 목적이 동일한 반소장에는 원래 납부하여야 할 인지액에서 본소의 소송목적의 값에 대한 인지액(항소심에서는 그 인지액의 1.5배액)을 뺀 나머지 액수의 인지액
4. 부대항소장 : 불복 범위의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
① 소변경 부대항소 인지액 = 부대항소가의 항소심 인지액 - 부대항소 전 소가의 항소심 인지액
② 반소 제기를 위한 부대항소 = 위의 3. 반소장의 내용과 동일
5. 기타 사건 : 제소전화해신청(소장 인지액의 1/5), 조정신청(소장 인지액의 1/10), 지급명령신청 (소장 인지액의 1/10)
6.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(소가 확장, 증가)
① 1심의 청구변경신청서 = 변경 후의 청구에 관한 인지액 - 변경 전의 청구에 관한 인지액
② 2심의 청구변경신청서 = 변경 후의 청구에 관한 인지액의 1.5배액 - 변경 전의 청구에 관한 인지액
7. 전자소송 특례(인지법 16조) : 위 1~6항에 의해 산정한 인지액의 9/10
※ 전자소송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: ① 전자 회원 가입(사용자 등록), ② 전자소송의 동의, ③ 전자적 제출(소장 등)
※ 전자기록 여부는 요건이 아니고, 전자기록이라도 위 서면을 전자적으로 제출하지 않고 스캔하여 전자화 경우에는 특례 적용되지 않음.

III 병합청구(원시적 병합)의 소가 산정 기준 (인지규칙 제19조~제24조, 민소법 제27조 제2항)

번호	병합청구의 경우	소가 산정의 기준
1	합산의 원칙	1개의 소로써 수개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(수개의 비재산권상 청구, 재산권상 청구와 비재산권상의 청구의 병합의 경우 포함) 합산 ※ 예외 : 흡수(다액) ① 비재산권상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된 사실로 발생하는 재산권상 소송을 병합한 경우(인지법 제2조 제5항) ② 비재산권상 소송의 병합 중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에는 1개의 소로 봄(인지규칙 제22조 단서)
2	흡수(다액) ① 수단인 청구가 주된 청구보다 다액인 경우 ② 경제적 이익이 동일, 중복의 경우	1) 의의 : 1개의 소로써 주장하는 수개의 청구의 주장이익이 동일, 중복의 경우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, 수단인 청구가 주된 청구보다 다액인 경우, 그 중 가장 다액이 소가 2) 소의 예 : ① 선택적 또는 예비적 병합, ② 주위적 청구와 대상청구의 병합, ③ 수인의 연대채무자 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당사자인 경우, ④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자 및 전득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, 말소등기의 절차의 이행청구의 소, ⑤ 동일한 권원에 기하여 확인청구 및 이행청구를 병합한 경우, ⑥ 선택채권
3	불산입 원칙 ① 부대청구(이자 등) ② 수단인 청구	① 부대청구의 불산입 : 이자, 과실, 손해배상,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때 (민소법 27조 제2항) ② 수단인 청구의 불산입 : 건물철거와 동시에 대지인도를 구하는 경우처럼 한 개의 청구(건물철거)가 다른 청구(대지인도)의 수단인 경우 단, 수단청구가 다액인 경우 흡수
4	필수적공동소송 및 기타소송	①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: 종종 재산에 대한 소송에서 종종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의 경우 - 원고의 수와 무관 ② 유사필수적 공동소송(흡수법칙) : 여러 명의 주주의 주주대표소송의 경우 - 경제적 이익이 동일, 중복 (※ 예외 : 여러 명의 채권자가 채권자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- 피대위 채권액을 상한으로 한 합산 법칙) ③ 기타 : 수개의 말소등기청구 [소유권보존(이전)등기권자, 근저당권자 등] - 그 중 다액

		※해고무효확인청구 + 임금지급청구 병합 : 다액 (인지법 제2조 제5항)
13	집행법상의 소	가.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 : 외국판결 또는 중재판정에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1/2 나. 집행문부여 및 그에 대한 이의의 소 : 청구권 가액의 1/10 다. 청구이의의 소 :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가액 라. 제3자이의의 소 :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권리의 가액 마. 배당이의의 소 : 배당증가액 바. 공유관계부인의 소 : 원고의 채권액을 한도로 한 목적물건가액의 1/2
14	행정소송	가. 금전·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납부를 명한 처분의 무효확인·취소의 소 : 환급받을 금전 또는 물건가액의 1/3 나. 체납처분취소의 소 : 체납처분근거세액을 한도로 한 목적물건가액의 1/3 (단, 위 가. 나.의 경우에 그 가액이 30억 원 초과시 30억 원으로 본다.) 다. 금전지급청구의 소 : 청구금액 라. 그 외 소송 : 비재산권의 소로 5천만 원
15	특허소송(무체재산권상의 소)	재산권상의 소로 소가산정이 어려운 소송(인지규칙 제17조의2, 제18조) : 1억 원

V 인지 환급 (인지법 14조)

※ 환급대상 : 민사, 가사, 행정, 특허사건

※ 환급청구기간 : 사유발생 날부터 3년 이내 청구

- 원칙 :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(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)환급
- 사유 :
 - 소장각하명령 (무변론 소각하 판결 비해당)
 - 해당 심급(사실심)의 변론종결 전(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전)에 소·항소·반소·청구의 교환적 변경신청·당사자 참가신청, 재심의 소 취하(취하간주 포함)
 - 사실심의 청구의 포기, 인낙, 화해(재판상화해와 동일효력의 경우 포함), 조정
 - 심리불속행 기각(상특법 제4조)
 - 상고이유서 미제출 기각(민소법 제429조)